[별표]

특수직무수당 지급대상 범위(제3조제1항관련)

기관별		비고
본청	▪산불방지과 ▪산사태방지과▪중앙산림재난상황실 ▪산림재난긴급대응반	각 부서장 포함
산림항공본부	▪산림항공과 ▪항공정비과 ▪항공안전과	각 부서장 포함
	▪산림항공관리소(안전항공, 운항관제, 항공정비)	소장, 팀장 포함
지방산림청	▪산림재해안전과(산림보호(산불), 산사태대응)	부서장, 팀장 포함
	▪국유림관리소(산림보호(산불), 산사태대응)	소장, 팀장 포함
기타	▪파견 또는 인사교류로 다른 기관 또는 업무지원 명령을 받아 산불·산사태 업무를 상시수행하는 공무원 (산불방지센터 파견자 등) * 보수를 산림청(소속기관 포함)에서 지급시 해당	
	▪지방산림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, 산림항공본부장 및 산림항공관리소장이 산불·산사태 업무를 상시수행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* 상시수행의 근거가 명시적이며, 인정가능한 증빙 필요	